1. 현행 제115조~제119조에 대한 개정
2. 목적 및 경위

2019년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회칙 제14장 ‘비상대책위위원회’는 모호한 점이 많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중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행 회칙

제115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본회 회장단이 모두 유고 상황인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대체한다.

제116조 (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된다.
2.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3.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4.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5. 운영위원회는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임시집행부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집행부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17조 (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사업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사업을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3월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8조 (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19조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집행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임시 집행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임시 집행부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개정안

제115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3.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제116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115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제117조 (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18조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상세 해설

개정안 제115조:

1.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항으로 나열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제115조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대체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회장단 궐위 시 해당 회장단이 모집한 집행부 역시 해산하게 되며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안 제116조:

1.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집행부’은 중복
2.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사유도 같이 공개하여 동아리연합회의 현황에 대한 공유가 더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구의 수장이 되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 및 비상대책위원 지원자가 아닌 운영위원이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호선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8조).
4. 11월 선거 무산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하였으며, 임기 시작 시점을 현 회장단 임기 만료 직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7조:

1. 상술하였듯이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 절차를 현행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호선 후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8조:

1.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다루는 조항인 만큼 업무와 권한에 대한 언급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현행 제117조제2항의 선거 관련 결정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3. 현행 제99조에 대한 개정
4. 목적 및 경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궐위라는 비상사태에서 필수적인 상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되는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에 의한 업무의 증감이 가능하여, 현행 회칙에서 정해진 예산안 심의 기간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을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1. 현행 회칙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5. 예산 평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6. 개정안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안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5.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6. 현행 제101조에 대한 개정
7. 목적 및 경위

비상대책위원장단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들이 활동비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원래 과도하게 압축되어 있던 제101조를 내용에 맞춰 항을 나누어 각 항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 현행 회칙

제101조 (활동비)

1.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국장,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에게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2.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집행부가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삭감한다.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개정안

제101조 (활동비)

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2. 분과학생회장
	3.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3.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7.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8. 신구문 대조표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해설 |
| 제115조 (지위)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본회 회장단이 모두 유고 상황인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대체한다.제116조 (구성)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된다.
2.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3.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4.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5. 운영위원회는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임시집행부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집행부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제115조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3.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제116조 (구성)1. 운영위원회는 제115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3. (삭제)
 | 구성 조건을 제116조제1항에서 제115조로 옮기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체하는 기구를 회장단에서 집행부로 정정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사유에 대한 공지를 추가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출하는 것을 비상대책위원을 인준하는 것으로 변경11월 선거 무산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그 임기 시작 시점을 현 회장단 임기 만료 직후로 설정비상대책위원장단을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삭제 |
| 제118조 (위원장단)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제117조 (위원장단)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개정된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 절차를 명시 |
| 제117조 (업무 및 권한)1.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사업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사업을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3월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118조 (업무 및 권한)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삭제)
 |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동시에 명시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므로 해당 항을 삭제 |
| 제119조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집행부)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임시 집행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임시 집행부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19조 (삭제) |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최고집행기구인 집행부를 대체하는 기구이므로 해당 조를 삭제 |
|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5. 예산 평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1. (현행과 같음)
2. 예산안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회기 시작 후 30일 내가 아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개정 |
| 제101조 (활동비)1.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국장,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에게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2.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집행부가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삭감한다.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01조 (활동비)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4. 분과학생회장
5.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6.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7. (현행 제4항과 같음)
8. (현행 제2호와 같음)
9.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10.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 활동비의 목적을 명문화활동비의 지급 대상을 명문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직을 활동비 지급 대상에 추가활동비의 집행 방식을 활동비의 목적과 분리하여 명시활동비 금액의 결정을 활동비 총액 관련 항 앞으로 이동운영위원과 집행부원의 활동비 삭감 원칙을 두 항으로 분리하여 명시 |